

1994. 5. 10. 제정	1994. 6. 11. 개정
1994. 6. 18. 개정	1997. 3. 13. 개정
2001. 3. 24. 개정	2002. 8. 30. 개정
2002. 9. 16. 개정	2003. 12. 8. 개정
2004. 12. 16. 개정	2006. 3. 15. 개정
2006. 6. 1. 개정	2006. 9. 11. 개정
2010. 10. 21. 개정	2011. 3. 23. 개정
2012. 3. 28. 개정	2014. 3. 28. 개정
2013. 11. 15. 개정	2015. 11. 20. 개정
2016. 03. 31. 개정	2018. 03. 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JW LIFESCIENCE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제조판매업
2. 동물용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의료용구, 위생용품 제조판매업
3. 신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연구개발 및 성과의 대여업
4. 신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인허가의 취득 및 그의 대여업
5. 신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연구개발의 노하우의 용역사업 및 판매
6. 의약품, 공업약품의 제조연구, 각종시험의 수탁업무
7. 수출입업
8. 건설·설비·공사업 및 용역업
9. 부동산 판매 및 임대업
10. 수액관련 용기 및 소재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11. 주택건설사업
12.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판매, 유통업
13.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 당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w->

lifescience.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백만주로 한다.

제6조 (주식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이천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며 종류주식은 3,750,000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잔여재산에 관한 우선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7조의 2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 ① 우선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우선배당률은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20%이하의 범위내에서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② 보통주식 1주당 배당금이 본조 제2항에 의한 우선주식의 1주당 우선배당금을 초과할 경우, 우선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비율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본조 제2항의 우선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미지급 배당금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되어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우선주식과 같은 종류 및 내용의 주식으로 한다.
- ⑤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주식은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여하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발행된 우선주식은 발행일에 관계 없이 원래의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본조 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7조의 3 (전환주식)

- ① 제7조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이하 "전환주식").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수는 원칙적으로 전환될 종류주식의 수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단, (i) 전환주식의 발행 이후의 다른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를 총칭하며, 이하 같다)를 발행하는 경우, (ii)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iii)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iv) 전환주식의 발행 이후의 이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조정조건은 전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해당금액을 전환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의 4 (상환주식)

- ① 회사는 제7조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상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날 또는 상환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주주에게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제7조의 5 (상환전환주식)

- ① 회사는 제7조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를 상환주식인 동시에 전환주식인 상환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 및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7조의 3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조의 4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 6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 ① 이 회사는 제7조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회사의 청산시 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액과 잔여재산분배시까지 누적된 미배당분을 합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금액이 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주와 동일한 비율로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7.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의3 규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삭 제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및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2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10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2장의2 사 채**제12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칠백오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가.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나.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다.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 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익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칠백오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나.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다.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발행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4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주주총회**제 13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4조 (소집권자)

- ① 이 회사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28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제4조에 정한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지)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의장)

- ① 이 회사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28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이 회사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주의 의결권) 이 회사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이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주총회 의사록) 이 회사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이사와 이사회

제23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24조 (이사의 선임)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이 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5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제 26조에 의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기존의 다른 이사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26조 (이사의 보선) 이 회사의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명,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의 직무)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10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 ① 이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89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 회사의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에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2조의2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 내부거래위원회
 - 3. 감사위원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 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임기(3년)당 과거 1년간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세부운영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34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수 있다.

제5장 감사

제35조 (감사의 선임)

-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그 중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35조1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5조2 (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자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6조2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6조3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 회사의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임기(3년)당 과거 1년간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세부운영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6장 계 산**제37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 38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제 1항의 서류를 받은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9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 | |
|-----------------|--------------|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40조 (이익배당)

- ① 이 회사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1조 (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
- ① 이 회사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7장 보 칙

제4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또는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